

<별지 제18호 서식> : 간이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동부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 위험등급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 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 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부진주찾기증권 투자신탁 제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 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 제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dongbuam.co.kr](http://www.dongbuam.co.kr))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2.8.23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8.27**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1조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의 본점 및 판매회사 영업점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간이투자설명서 상세목차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명칭
2. 모집예정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펀드존속기간
5. 분류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추이(세전기준)

## III. 매입, 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 IV. 요약재무정보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명칭 :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명 명칭)	한국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동부진주찾기증권투자신탁제1호[주식]	58646
A	69002
C1	68679
C-I	92453
C-E	74886
C-F	72295
C-H	75158
C2	95855
C3	95856
C4	95857
C5	95858
B	A2242

### 2. 모집예정기간

추가형으로 모집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 3. 모집예정금액

1조좌까지 모집 가능하며 1좌 단위로 모집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됩니다.

### 4. 펀드존속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의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분류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 종류형 (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동부자산운용 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5-12,14 신송센터빌딩 19층(대표전화: 02-787-3700)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I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 1. 주요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60% 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로서 PBR(주가순자산비율) 및 ROE(주가수익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가치주) 가. 동일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대비 높은 ROE(주가수익,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나. 동일 ROE(주가수익, 당기순이익/자기자본) 대비 낮은 PBR(주가순자산비율, 주가/주당순자산) 다만, 가치주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하며,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식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② 채권	35% 이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③ 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④ 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3- 이상)
⑤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거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KOSPI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개별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 및 옵션, 국제선물등에 투자하여 헷지목적 또는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함)

\* 상기 투자대상은 모든 투자대상을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은 증권신고서와 정식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식"을 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며, 국내주식 중 가치주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신탁업자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수익자에 대해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는  $KOSPI \times 95\% + Call \times 5\%$  입니다. KOSPI지수는 한국거래소가 시가총액식으로 산출하여 주가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서 한국증시의 현황을 가장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나타낸다고 판단하여 비교지수로 사용하였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 지수의 등장에 따라 비교지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 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비교지수 수익률은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http://www.dongbuam.co.kr))에서 확인가능)

- 동부자산운용 애널리스트의 역량 집중
  - 섹터 애널리스트에 의한 책임리서치 체제 구축으로 유망종목 발굴에 주력
  - 애널리스트의 기업탐방을 통해 저평가 소외주 적극적 발굴
- 가치주 장기투자 전략
  - PBR&ROE를 기준으로 선정된 가치주에 대해 주식투자비중의 60% 이상 유지
  - 기업가치 대비 저평가된 우량주 장기보유
- 포트폴리오 구성
  - 균등분할투자 개념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단, 시가총액, 저평가 정도등을 감안해 편입비 조정 가능
  - 중소형 종목에 대한 투자비중 30% 이상 유지
  - 포트폴리오 종목 교체
    - 종목별 목표주가 도달시 분할 매도
    - 회사의 고유경쟁력, 업황 등 펀더멘탈 변동시 즉각 교체
- 위험관리
  - 주식편입비중을 높게 유지하는 만큼 종목별 마이너스 수익률 진행 정도에 대해 구간별로 관리할 예정
  - 특정 섹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자제로 섹터간 위험관리 진행.

## 3. 수익구조



##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가. 일반위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집합투자재산을 상장주식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변동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집합투자재산을 국내 상장주식 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주식가격이 하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의 변동에 따라 변동됩니다.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의 가격의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행하나,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의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및 부도위험	투자적격등급(BBB-)이상의 채권 등에 투자할 예정이나, 발행사의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하거나, 부도 등의 신용사건(Credit Event)이 발생할 경우 채무증권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환금성 제약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옵션매도에 따른 이론적인 손실범위는 무한대이므로 기초자산에 대한 투자나 옵션매수의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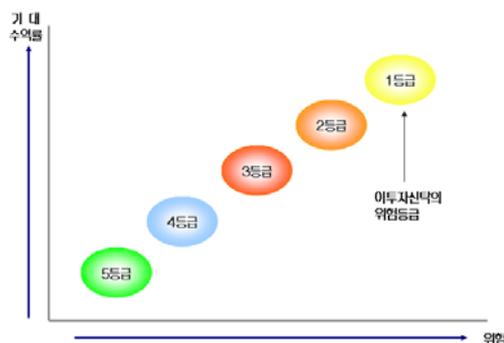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집합투자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집합투자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식에 투자하지 않거나, 주식에의 투자비중이 낮은 집합투자기구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5등급 중 1등급(매우 높은 위험)에 해당되는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주권의 가치변동, 경제상황 변동 등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성향을 가지고 있는 장기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6. 운용전문인력(2012. 8. 21 기준)

###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기호삼	1968년	책임운 용전문 인력	6	1,323억	- 대한투자신탁 ('95. 2 ~'07. 7) - 하나UBS자산운용('07.7~'11.4) - 2011.4~ 현재 동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현 동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리서치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당사의 펀드운용은 팀제에 의해 운용하고, 집합투자업자의 사정에 따라 운용전문인력이 교체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시할 예정입니다.

###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현황 :

홍현기	2006.7.21~2010.4.26
이준혁	2010.4.27~2012.8.26
기호삼	2012.8.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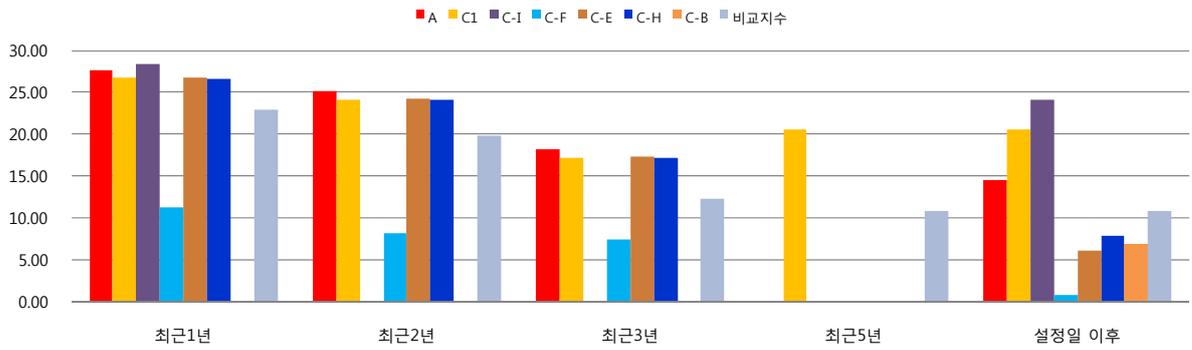
## 7. 투자실적 추이(세전기준)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성과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http://www.kofia.or.kr)) 전자 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 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교지수는 KOSPI\*95% + Call \* 5%로서,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가. 연평균 수익률

- 연평균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 방식으로 계산된 것으로서 해당기간 동안 평균수익률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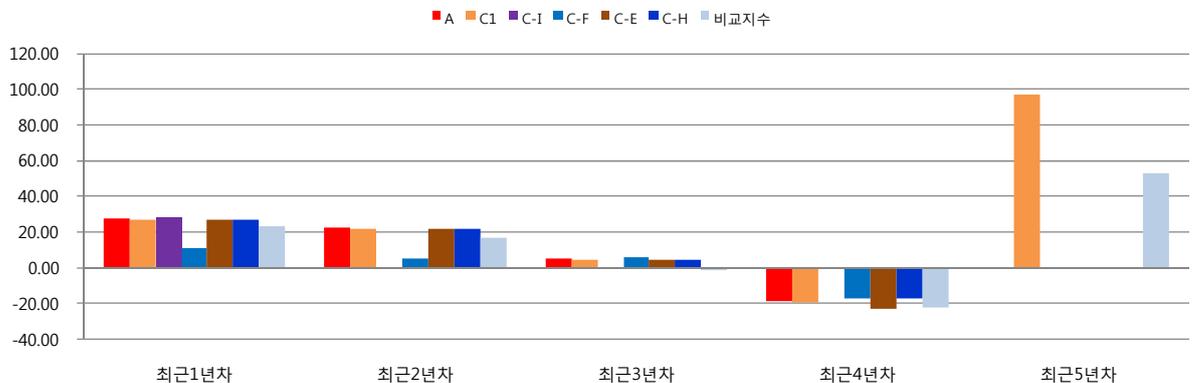
연도	최근 1년 2010.07.21 ~ 2011.07.20	최근 2년 2009.07.21 ~ 2011.07.20	최근 3년 2008.07.21 ~ 2011.07.20	최근 5년 2006.07.21 ~ 2011.07.20	설정일 이후 2006.07.21 ~ 2011.07.20
A	27.63	25.14	18.14		14.59
C1	26.72	24.12	17.11	20.63	20.62
C-I	28.44				24.13
C-F	11.27	8.12	7.43		0.76
C-E	26.83	24.27	17.28		6.06
C-H	26.69	24.14	17.16		7.91
C-B					6.80
비교지수	22.98	19.81	12.26	10.87	10.86



## 나. 연도별 수익률

-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 1년 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 동안 해당펀드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냅니다.

연도	최근 1 년차 2010.07.21 ~ 2011.07.20	최근 2 년차 2009.07.21 ~ 2010.07.20	최근 3 년차 2008.07.21 ~ 2009.07.20	최근 4 년차 2007.07.21 ~ 2008.07.20	최근 5 년차 2006.07.21 ~ 2007.07.20
A	27.63	22.70	5.29	-18.45	
C1	26.72	21.58	4.25	-19.30	97.06
C-I	28.44				
C-F	11.27	5.07	6.05	-16.89	
C-E	26.83	21.76	4.46	-22.63	
C-H	26.69	21.64	4.36	-17.29	
비교지수	22.98	16.72	-1.43	-22.52	52.78



## 매입 · 환매관련 정보

### 1. 수수료 및 보수

-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I	C-E	C-F	C-H	B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	-	-	-	-	-	-	-	-	-	매입시
후취판매수수료	-	-	-	-	-	-	-	-	-	-	환매금액의 1.0%이내	환매시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범위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습니다. 차등적용의 내용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I	C-F	B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0.7325	매 3개월 후급
판매회사	0.72	1.5	1.38	1.25	1.13	1.0	0.04	0.0	0.75	
신탁업자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0.0175	사유발생시
기타비용 <sup>주1)</sup>	0.0068	0.0062	0.0068	0.0074	0.0072	0.0065	0.0076	0.0071	0.0071	
종보수비용 비율 <sup>주2)</sup> TER	1.5068	2.2862	2.1668	2.0374	1.9172	1.7865	0.8276	0.7871	1.5371	-
증권거래비용 <sup>주3)</sup>	0.8934	0.7811	0.8731	0.9903	0.9538	0.8954	0.7672	0.7989	0.6887	사유발생시

구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연간, %)										
	C-E					C-H					
집합투자업자	0.7325					0.7325					
판매회사	최초설정일 ~ 2010.10.17	2010.10.18 ~ 2011.10.17	2011.10.18 ~ 2012.10.17	2012.10.18 ~ 2013.10.17	2013.10.18 ~	최초설정일 ~ 2010.10.17	2010.10.18 ~ 2011.10.17	2011.10.18 ~ 2012.10.17	2012.10.18 ~ 2013.10.17	2013.10.18 ~	2013.10.18 ~
	1.52	1.34	1.16	0.98	0.8	1.62	1.47	1.32	1.17	1.0	
신탁업자	0.03					0.03					
일반사무관리	0.0175					0.0175					
기타비용 <sup>주1)</sup>	0.0068					0.0068					
종보수·비용 비율 <sup>주2)</sup> TER	-	2.1268	-	-	-	-	2.2568	-	-	-	-
증권거래비용 <sup>주3)</sup>	0.8940					0.8821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 거래 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써 2010.7.21~2011.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 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과 작성기준일 현재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은

Class C1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2) 총보수·비용비율(TER)은 집합투자기구에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 (보수·비용 차감 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

주3) 증권거래비용은 **2010.7.21~2011.7.20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 수익증권과 작성기준일 현재 6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종류 수익증권은 Class C1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사용하였으므로 실제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투자기간	1년	3년	5년	10년
Class A	251,910	581,028	943,881	2,022,176
C1 가입자로 자동전환시	234,307	714,795	1,175,840	2,498,721
Class C-E	217,968	687,147	1,204,416	2,741,589
Class C-F	80,662	254,288	445,711	1,014,565
Class C-H	231,294	729,155	1,278,047	2,909,196
Class C-I	84,814	267,377	468,652	1,066,786
Class B	157,528	496,609	870,445	1,981,378

※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류 C1 수익증권은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매 1년 단위로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5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을 가정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Class B의 경우 후취판매 수수료는 환매금액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상기 비용예시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다. 가입자격

종류별	가입자격
Class A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Class C1	가입제한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Class C2	Class C1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3	Class C2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4	Class C3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5	Class C4수익증권을 1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수익자
Class C-I	납입금액 50억이상 가입자, 보험업법상 특별계정,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투자자
Class C-F	집합투자기구 및 Wrap계좌 전용
Class C-E	인터넷 가입 투자자 전용
Class C-H	장기주택마련 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 B	가입제한 없으며, 후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 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 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소득세율 35%, 주민세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법인의 결산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 징수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4)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의 세제우대: 배당소득(농특세포함) 비과세 및 소득공제

### 1.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가. 기존 적립식펀드 가입자 : 기존 적립기간과 무관하게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추가로 3 년 이상 적립기간 의사를 표현하고 그 이후 불입한 금액과 발생한 소득

나. 신규 가입자 : 세제우대 시행일 이후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 신규 적립식계좌를 개설하는 가입자가 그 적립기간을 3 년 이상으로 한 경우

2.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한도 : 분기별 300 만원(연간 1,200 만원)

3. 비과세 및 소득공제 대상 금액 산출 방법 : 개인별로 합산

(다수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 가능)

### 4. 소득공제 비율

가. 1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20%

나. 2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10%

다. 3 년차 : 기간 중 불입액의 5%

(5) 기타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전용 Class(Class C-H) 세제혜택

1. 가입대상 : 만 18 세 이상으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가입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 세제혜택 : - 7년 이상 가입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 연간 불입액의 40%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 부여(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8천 8백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만 종전의 규정에 따름)
3. 비과세 요건 :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해 비과세 요건 부여
4.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  
 (단, 전 금융기관에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펀드의 합계금액 기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판매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당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수수료 등 종류별로 부과되는 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수익증권 종류별로 기준 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dongbuam.co.kr">www.dongbuam.co.kr</a> ),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인터넷홈페이지

(2) 매입 및 환매절차

가. 매입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납입시	입금일	(매입청구일)	집합투자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하거나 판매 회사에 따라 인터넷에서 온라인 환매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다. 환매수수료**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부과하며, 부과된 환매수수료는 투자신탁재산으로 편입됩니다. 단, 채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구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지급시기
	A	C1	C2	C3	C4	C5	C1	CE	CF	CH	B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 판매회사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환매금액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제정한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라.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등**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경과 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마. 전환 :**

- (1)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 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C1 클래스에 한합니다.
- (2)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하되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3)전환하는 경우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전환하고자 하는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전환일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4)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합니다.

(5)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및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 후 추가납입분에 대해서는(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6) 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 조치

① 위 전환방법의 (1)에 불구하고 2010년 10월 18일에 종류 C1의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보유기간에 따라 종류 C2부터 종류 C5까지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② 위 ①에 따른 자동 전환을 위하여 신규 수익증권의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 30조제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③ 위 ①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증권의 전환일에 관계없이 당초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보유기간을 산정합니다.

## IV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하여 서일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은 결과 제5기의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요약재무정보	제 5 기	제 4 기	제 3 기
	20110720	20100720	20090720
I. 운용자산	96,671,663,458	54,167,592,266	62,017,830,624
증권	94,940,862,475	51,962,434,640	60,533,198,295
현금 및 예치금	1,730,800,983	2,205,157,626	1,484,632,329
II. 기타자산	24,540,430,891	345,600,710	2,630,416,127
자산총계	121,212,094,349	54,513,192,976	64,648,246,751
II. 기타부채	11,768,711,433	1,000,690,121	2,101,156,301
부채총계	11,768,711,433	1,000,690,121	2,101,156,301
I. 원본	85,538,982,981	51,286,521,363	73,315,535,152
II. 수익조정금	6,876,426,869	90,805,622	445,286,705
III. 이익잉여금	17,027,973,066	2,135,175,870	-11,213,731,407
자본총계	109,443,382,916	53,512,502,855	62,547,090,450
I. 운용수익	18,096,696,426	13,956,508,989	3,588,165,702
이자수익	84,295,493	41,867,600	136,735,712
배당수익	955,985,415	617,666,755	798,448,600
매매/평가차익(손)	17,023,510,093	13,268,731,788	2,618,664,441
기타이익	32,905,425	28,242,846	34,316,949
II. 운용비용	1,052,474,776	1,052,888,417	1,000,647,896
관련회사보수	1,046,417,958	1,048,271,258	973,890,455

기타비용	6,056,818	4,617,159	26,757,441
III. 당기 순이익	17,044,221,650	12,903,620,572	2,587,517,806
* 매매회전율	333	308	239
* 매매수수료	665,459,478	484,575,550	358,820,498